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콘텐츠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방법과 우리나라의 주요 연금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수급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고, 제도별 연계 방법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1
1. 고령자를 위한 연금제도 4
1.1. 연금제도 이해 4
1.1.1. 연금제도 체계 4
2. 공적연금제도 7
2.1. 국민연금 7
2.1.1. 노령연금 7
2.2. 직역연금 11
2.2.1. 공무원 퇴직연금 11
2.2.2. 군인 퇴역연금 16
2.2.3.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19
2.2.4.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24
2.3. 공적연금 연계제도 28
2.3.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28
3. 사적연금제도 33
3.1. 퇴직연금제도 33
3.1.1. 퇴직연금 33
3.2. 개인연금제도 36
3.2.1. 연금저축 36
3.2.2. 연금보험 39
4. 그 밖의 연금제도 42
4.1. 복지성 연금제도 42
4.1.1. 기초연금 42
4.2. 부동산 연금제도 44
4.2.1. 주택연금 44
4.2.2. 농지연금 48

1. 고령자를 위한 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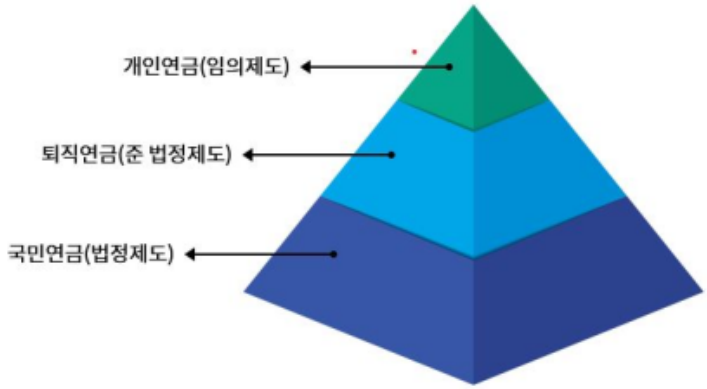
1.1. 연금제도 이해

1.1.1. 연금제도 체계

노후를 든든하게! “3층 연금제도” 알아보기

3층 연금체계

▪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1층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이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출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3층 연금체계도>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1층 보장은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제도”란?

▪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도>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2층 보장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또한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회사 도산 시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적립	회사 내부	회사 외부(금융기간)
퇴직금 운용	회사 내부	회사(DB) 또는 근로자(DC)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불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퇴직금 수령	일시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수령)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퇴직 시 IRP계좌로 이전하거나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
퇴직금 계산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수급권 보장	일부 보장	보장 (DB: 금융사 적립분/DC: 전액)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참조>

3층 보장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제도”란?

▪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운용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안내 참조).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됨
-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함**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자주찾는 질문>

2. 공적연금제도

2.1. 국민연금

2.1.1. 노령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핵심, “노령연금”을 알아보세요.

“노령연금”이란?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 ※ 국민연금 가입 대상
>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람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노령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1항 참조).

구분	내용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출생자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5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61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6세)	56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62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7세)	57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63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	58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64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	59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면 “일반노령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노령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 50%) +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다음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분을 뺀 금액이 지급되며, 이 경우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부칙(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제2조].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감액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참조).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자주찾는 질문>

조금 이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해보세요.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참조).

조기노령연금액

▪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신청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5%를 더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참조).

수급연령	수급연령별 비율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70%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76%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82%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88%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94%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알아보세요.

수급권자

▪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제6조].

출생연도	연기가능기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1년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2년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3년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4년
1969년 이후 출생자	5년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3항).

▪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4항, 제5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이 경우 0.6%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조정함)

“노령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지급 청구

▪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노령연금 수급

▪ 노령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 **노령연금 신청방법**
>
> • 전자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
>
> • 방문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문의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 ※ 그 밖에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직역연금

2.2.1. 공무원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이란?

▪ “공무원 퇴직연금”이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사유
1. 65세가 되는 때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호).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구분	내용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996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개시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계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개시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10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10조제2항]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개시연령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5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6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7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9세
2021년부터	60세

퇴직연금액

▪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3조제2항, 제15조제12항·제14항·제16항].

재직기간	연금월액
2009년 12월 31일 이전	• 20년 이상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미만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2016년 1월 1일 이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 연금지급율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율 중 1% 초과분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 참조>

▪ 산정된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퇴직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 > 또는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퇴직연금이 정지될 수 있으니, "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지급정지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퇴직연금 정지기간

▪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2항).

퇴직 후 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지급 청구

▪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 퇴직연금은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조).

Q. 외국에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나요?

A.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6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이 경우, 매년 해외거주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참조).

반면, 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매월 받는 연금 대신 4년분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6조제1항).

※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 인터넷: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 방문신청: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 문의처: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 그 밖에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군인 퇴역연금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 “퇴역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보세요.

“군인 퇴역연금”이란?

▪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본문).

▪ 퇴역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단서 참조).

구분	내용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복무기간의 계산

▪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1항 및 제6항).

▹ 위의 복무기간에는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제외)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5항).

퇴역연금액

▪ 퇴역연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함)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에 대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내연금조회>를 통해 퇴역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퇴역연금이 정지될 수 있으니,“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지급정지

▪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퇴역연금 지급정지사유
1.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단서).

퇴역연금 지급정지금액

▪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4항).

퇴역연금 정지기간

▪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군 복무 후 연금을 받으려면? “퇴역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지급 청구

▪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군재정관리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6조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

퇴역연금 수급

▪ 퇴역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1항, 제4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군인 퇴역연금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신청서비스
- 방문 신청: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처: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그 밖에 군인 퇴역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오랜 교육활동의 보상,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이란?

▪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지급사유
1. 65세가 되는 때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사립학교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제3항).

구분	내용
조기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996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수급연령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7조제1항 및 제8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계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7조제2항 및 제8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수급개시연령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부칙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30호, 2000. 12. 30.) 제8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부칙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30호, 2000. 12. 30.) 제8조제2항]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연령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5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6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7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9세
2021년부터	60세

퇴직연금액

▪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법률 제9908호, 2009. 12. 31.) 제4조제2항·제7항, 부칙(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재직기간	연금월액
2009년 12월 31일 이전	• 20년 초과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이하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2016년 1월 1일 이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 중 1% 초과분

<출처: 사학연금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 참조>

▪ 산정된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 퇴직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주요사업-연금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도 일정 조건에서는 정지될 수 있으니, "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지급정지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퇴직연금 정지기간

▪ 퇴직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2항).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교직원 퇴직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지급 청구

▪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 퇴직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5).

※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연금서비스
- 방문 신청: 사학연금관리공단 지역센터

• 문의처: 사학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 ☎1588-4110

※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4.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직원도 퇴직 후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이란?

▪ 별정우체국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 지급사유
1. 65세가 되는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별정우체국직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별정우체국장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참조).

구분	내용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수급연령

▪ 퇴직연금 수급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997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수급연령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1항 및 제8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2항 및 제8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수급연령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그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528호, 2001. 12. 19.) 제8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528호, 2001. 12. 19.) 제8조제2항]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연령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5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6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7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9세
2021년부터	60세

퇴직연금액

▪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제8조제2항·제5항,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9조제2항·제12조제2항].

재직기간	연금월액
2011년 5월 31일 이전	• 20년 초과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이하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2016년 1월 1일 이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출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주요산업-연금사업-퇴직급여 참조>

▪ 산정된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3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퇴직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주요사업-연금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별정우체국 퇴직연금도“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1항).

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1.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3항).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퇴직연금 정지기간

▪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2항).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절차”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급 청구

▪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별정우체국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수급 신청을 받은 소속 별정우체국에서는 해당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이송하게 됩니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 퇴직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1항, 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 그 밖에 별정우체국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공적연금 연계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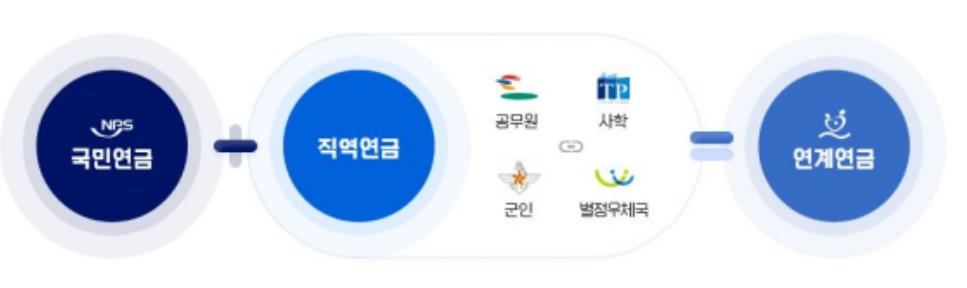
2.3.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연금연계제도**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제도소개)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연계대상 공적연금		가입(재직/복무)기간
국민연금 (다만,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Q.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두 제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10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6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6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2009년 2월 6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득이되는 연금이야기』(공무원연금공단, 2025) 20쪽 참조>

연계신청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5호).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연계대상	내용	
직역연금 → 국민연금	퇴직일시금 수령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국민연금 → 직역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연금연계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
- 연금관리기관 문의처
  -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고객센터 ☎1355
  - ②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고객센터 ☎1588-4321
  -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tp.or.kr), 고객센터 ☎1588-4110
  - ④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 ☎044-410-370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의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고, 수급연령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단서 및 부칙(법률 제18412호, 2021. 8. 17.) 제2조].

구 분	최소연계기간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년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20년

수급연령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본문].

출생연도	연령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이하 "직역연금법"이라 함)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함)이 위에 따른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단서].

연계노령연금액

▪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분	연계노령연금액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함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①과 ②를 곱한 금액**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을 20으로 나눈 비율**

연계퇴직연금액

▪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연계노령연금액 또는 연계퇴직연금액의 예상 연금액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급여를 받기 위한 "연계급여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지급 청구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연계급여 지급개시 사유

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연령이 된 날
2. 수급연령 이상인 사람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내어 위 1. 또는 2.에 해당하게 된 날

※ 그 밖에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적연금제도

3.1. 퇴직연금제도

3.1.1. 퇴직연금

기업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세요.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퇴직연금 소개 참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제24조제3항 참조).

구분	내용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사용자가 부담금 이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퇴직연금 수급요건

▪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 연금수령한도 계산**
>
> - 연금수령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1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위의 수급요건을 갖춘 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와 수령 시 과세방식을 함께 알아보세요.

퇴직연금(DC, IRP)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 퇴직연금 계좌(DC,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함) 중 연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연 6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 연금수령한도에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말함)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 연금수령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2제2항,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연금수령 개시연령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간)확정형	종신형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70세 미만	5.5%	3.3%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3.2. 개인연금제도

3.2.1.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참조).

- 연금저축신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연금저축펀드: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주요 내용

구분	은행 (신탁업자)	자산운용사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주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판매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주3), 종신형(생보)
원금보장	비보장주2)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주2)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전됨

주3) 손보는 최대 25년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연금저축 제도안내)

연금저축 납입

▪ 연금저축의 종류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2호).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연금수령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금수령한도 계산

- 연금수령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항 본문).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위의 수급요건을 갖춘 후 본인의 연금저축 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알아보세요.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 연금수령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2제2항,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연금수령 개시연령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형	종신형 (말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70세 미만	5.5%	3.3%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용어해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은 대표적으로 연금수령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세제비적격 상품은 소등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3.2.2.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란?

▪ 연금보험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5호).

구분	내용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시중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받음
변액연금보험	적립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일시납 연금보험	목돈을 한 번에 납입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높은 초기자금이 필요함

연금수령

▪ 연금보험을 통한 연금의 수령은 보험의 유형과 가입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일과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가 면제돼요.

이자소득세 면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단서).

1.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시험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아래 ②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함]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최초납입일”이라 함)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함]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2.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③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기대여명연수"라 함)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함)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함]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frac{\text{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text{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times 3$$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비교

구분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
세제혜택 시점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입 시
세제혜택 내용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연간 600만원까지),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제혜택 요건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 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보험료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15.4% 발생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연금 수령 기간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선택 가능) ·종신 보장	만 55세 이후

<출처: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시점·내용·요건 달라요", (브릿지경제, 2025. 4. 14.) 참조>

4. 그 밖의 연금제도

4.1. 복지성 연금제도

4.1.1. 기초연금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구 분	기초연금액
1.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1/2)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이란?

•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 기초연금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부터 수급까지 알아보세요.

지급 신청

▪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 기초연금은 수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부동산 연금제도

4.2.1.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지금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①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주택연금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

대상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가(2)·(3)].

▪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1) 및 (2) 참조].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3조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 1. 참조).

지급방식	지급유형	내용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정액형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출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 참조>

주택연금 지급금액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1항).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2항).

※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절차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신청-신청안내 참조).

신청절차	내용
① 상담/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②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④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⑤ 대출실행 (금융기관)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 주택연금 가입방법

-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방문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농지연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 참조).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농지연금 신청대상

▪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및 제2항).

-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조 본문).

기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가입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제1항).

담보농지의 요건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됨)
3.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5.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다음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2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제2항).

-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명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제공 가능)
-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다만, 위 담보농지 요건의 2.에 해당하거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은 제외)

농지연금은 종신형이나 기간형으로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법

▪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 참조).

지급방식	내용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다만,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20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은퇴직불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5년/6년/7년/8년/9년/10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출처: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농지연금-사업안내 참조>

※ 농지연금의 예상금액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정보, 농지가격 등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절차

▪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 **농지연금 가입방법**

- 인터넷 상담신청: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
-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그 밖에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농지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안내**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매수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으로 산림청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매수가 제한됩니다.
- 매매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합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 참조)